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진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681

발의연월일: 2025. 6. 9.

발 의 자:정진욱・박지원・김 윤

민병덕 • 양부남 • 이개호

장종태 • 이재관 • 이광희

김 현 · 이병진 · 오세희

최민희 · 염태영 · 신정훈

전진숙 · 채현일 의원

(1791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5년 4월 SK텔레콤의 홈 가입자 서버(HSS)가 해킹되어 약 2,300 만명의 가입자 정보가 유출되었는데, 이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 어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혼란과 불안감을 초래하였음.

휴대전화 해킹과 같은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거나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디지털취약계층은 사전 예방은 물론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조차 어렵고 복잡하여 피해가 집중되고 구조적으로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됨.

2026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「디지털포용법」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사회 참여 및 접근성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나, 침해사고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의 신속한 지원이나 보호 조치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입

법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.

이에 따라 침해사고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취약계 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디지털취약계층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안전하게 침해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5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0672호 디지털포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5조의2(침해사고 대응 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침해사고(이하 "침해사고"라 한다) 발생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침해사고 대응 지원에 관한 적용례)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20672호 디지털포용법	법률 제20672호 디지털포용법
<u><신 설></u>	제25조의2(침해사고 대응 지원)
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정보
	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
	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
	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(이하
	"침해사고"라 한다) 발생 시 대
	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
	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
	응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
	<u>다.</u>